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98

발의연월일: 2020. 11. 5.

발 의 자: 강기윤ㆍ이종성ㆍ김희국

최형두 · 조명희 · 박성중

구자근 · 김희곤 · 윤영석

전봉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, 계약이 체결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 하여, 의료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,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,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,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 는 것임(안 제44조제1항 후단 및 안 제4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후단 중 "있다"를 "있고,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따른 수도권을 말한다. 이하 제45조에서 같다)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"로 한다.

제4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 요양	제44조(비용의 일부부담) ①
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	
일부(이하 "본인일부부담금"이	
라 한다)를 본인이 부담한다.	<u>.</u>
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	
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	
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	
있다.	있고,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
	는 제4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
	수도권(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
	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
	말한다. 이하 제45조에서 같다)과
	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일부부담
	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45조(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)	제45조(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
	요양급여비용을 정하는 경우
	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
	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<u>④</u> ~ <u>⑦</u> (생 략)	$\underline{5} \sim \underline{8}$ (현행 제 4 항부터 제 7

항까지와 같음)